

2024

화성예술지원 통합 공모

1.16.(화) ~ 2.4.(일)

www.hcf.or.kr



고민작 <정좌부, 50x40cm, 비단에 채색, 2023> @nivea0104

- ◆ 화성예술활동지원
- ◆ 모든예술31화성
- ◆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 ◆ 문화취약계층 특화지원

contents

들어가며

- 2024년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 주요 공모계획 안내
- 2024년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주요사항
- 화성예술지원 공모 안내
- 사업별 세부 안내
 1. <화성예술활동지원> 사업
 - 공모안내
 - 공연예술분야
 - 시각예술분야
 - 문학부문
 2.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화성
 - 사업 개요 및 안내
 3.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사업
 - 사업 개요 및 안내
 4. <문화취약계층 특화지원> 사업
 - 사업 개요 및 안내
-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요령



2024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사업설명회 안내

「화성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문화취약계층 특화지원」

일시 : 2024. 1. 19.(금) 14:00

장소 : 동탄북합문화센터 1층 아르고공연연습센터@화성 대연습실

문의 : 예술창작지원팀(031-290-4672~3)



부정청탁금지

화성시문화재단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비리없는 공정심사를 위해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청탁 등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재단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로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초석이 되는 길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금품, 청탁, 부당한 업무 신고

화성시문화재단 감사팀

031-8015-8242 | 홈페이지 > 메인화면 맨아래 > 클린신고센터

들어가며



(재)화성시문화재단은 지역 고유의 예술창작활동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화성시 예술인 여러분의 예술활동에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예술인 여러분의 예술활동 정진을 응원하며, 이번 지원 사업이 화성시 지역예술 생태에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불러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재)화성시문화재단

2024년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 주요 공모계획 안내

지원 사업명		지원분야	지원내용	공모시기	접수방법	문의처	비고
예술지원센터	화성예술 활동지원	창작 활동 지원	2024 미발표 신작의 창작 및 초연·전시·상영·출판 등 활동비 지원 3백만 원~2천만 원 차등지원	공고 및 접수 1월 16일(화) ~ 2월 4일(일)	전자우편 접수 artsupport@hcf.or.kr	예술 창작지원팀 031-290-4673	<화성예술지원> 통합 공모 지원 사업 간 동일한 예술인(단체)의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경기 예술지원 모든예술31 화성	모든 예술 활동	- 화성시 각지의 일상 속 다양한 소규모 문화 예술활동 지원 -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발표/공유가 가능한 공연, 전시, 행사, 교육 등 형태 무관 모든예술 활동(2~7백만 원 차등지원)			예술 창작지원팀 031-290-4672	
	통합 공모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신진 예술인 창작 및 자립준비금 지원 ※ 개인당 450만 원 x 15명(생애 1회 지급)			예술 창작지원팀 031-290-4676	
	문화취약 계층 특화 지원	장애, 다문화 대상 특화 지원	- 장애 및 다문화 대상 예술 활동 지원 - 최대 1,500만 원 차등 지원		* 전자우편 접수 artistsupport@hcf.or.kr	예술인지원팀 031-290-4602	
	지역예술 유통 활성화	예술 유통 지원	- 아트페어 참가 지원 - 아트페어 참가비 및 운송비 등 지원	1~2월 중	화성시 문화재단 홈페이지	예술인지원팀 031-290-4604	<2024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최종 선정 시 택1)
화성형 문화예술 후원		화성형 메세나	- 예술단체를 후원하는 기업 기부금과 재단 지원금을 1:1로 매칭하여 화성예술인의 문화 예술 프로젝트 지원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시민기부 프로젝트 매칭 지원(예술지원센터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연중	화성시 문화재단 홈페이지	예술인지원팀 031-290-4603	
거점 활성화 지원			- 공간(장소) 기반의 실험적인 예술 프로젝트 지원 8건 프로젝트 내외 총 550,000천 원 지원 (프로젝트 별 차등 지원)	3~4월 중	화성시 문화재단 홈페이지	예술교육 지원팀 031-290-4691	센터 내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2024년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주요사항

알기쉬운

1 더 알기쉬운 예술지원 사업 : 통합공모 추진

- 화성시 예술지원사업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공모 추진
- 화성시 지역특색을 반영한 4개 예술지원사업 <2024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연번	사업명	공모기간	접수처
1	화성예술활동지원	1. 16.(화) ~2. 4.(일)	artsupport@hcf.or.kr
2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화성		
3	신진예술인자립지원		
4	문화취약계층 특화지원(신규)		artistsupport@hcf.or.kr

지원확대

2 화성시 예술지원 확대 : 예술지원의 범주 확대

- 예술 생애주기(Art Life Cycle)별 지원사업 구성

도입	성장	확립	유통
예술활동 기회 증진, 신진예술인 배양	예술창작 및 초연활동 지원, 전문예술인 성장	지속적인 지역예술활동/ 예술활동 거점 지원	지역예술콘텐츠 유통 지원

- 지원트랙 및 지원대상 범위 확대

구분	기존	변경 후(2024년)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지원대상 : 청년 예술인 (만 19세~39세 이하)	① 청년 : 만 19세~만 39세 이하
		② 신진 : 지원 분야의 예술활동 경력 3년 이내의 자
		③ 경력단절 : 질병,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군대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
문화취약계층 특화지원	-	문화취약계층(장애/다문화)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맞춤형 특화지원 신규 도입
모든예술31	활동 이력이 있는 공연/전시 20건 지원	시민 대상 발표·공유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예술활동 40건 지원
	지원대상 : 전문 예술인	지원대상 : 생활예술동호회 포함 모든 예술인

-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확대

구분	기존	변경 후(2024년)
화성예술활동지원	39건, 328,000천 원 지원	50건, 400,000천 원 지원 목표

예술현장

3 예술 현장을 고려하는 예술지원 : 의견수렴을 통한 예술지원 현장의 편의성 증진

-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사업 운영 개선
 - 지원금에 따른 예술인의 자부담금 편성 의무를 폐지하고, 자부담금 미정산
 - 심의 시 지원금 조정범위 기존 신청금액의 70%까지 하한 도입
 - 상반기 공연장 5일 우선대관 지원
 - (‘화성예술활동지원’ 공연부문에만 해당, 심의 단계에서 신청자 공연일 배정 예정)
 - 단체의 경우 ‘대표자 사례비’ 인정 범위 확대 도입(기획, 연출 등 지원사업 참여 시 편성 가능)

공정심의

4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 및 평가 운영

-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풀 모집 및 선정을 통한 전문성 있고 공정한 심의 진행
- 전문가 평가 및 관객 평가를 통한 지원사업 현장평가 운영
-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금 관리를 위해 지원금 교부 요건 강화

구분	기존	변경 후(2024년)
교부요건	교부 신청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미확인	교부 신청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회계검토	해당하는 경우 외부 회계검토	전 사업 외부 회계검토 필수 * 문학 출간지원 부분 제외

예술-시민

5 시민과의 접점을 위한 환류기회 마련

- 예술지원 활동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회 진행
-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쇼케이스 워크 진행
- 모든예술31 화성 시민 평가단 운영

2024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지원안내서

2024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안내

2024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안내



2024 화성시 예술지원 공모 구성

사업명	내용	지원규모
1. 화성예술활동 지원	미발표 신작의 초연·전시· 상영·출판 등 문화예술활동	총 50건 / 4억 예산 내 차등 지원 개인 3백만~1천 2백만 원 단체 4백만~2천만 원
2.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화성	공연, 전시, 행사, 교육 등 형태 무관 일상 속 모든 문화예술활동	총 40건 / 1억 7천 8백만 원 예산 내 차등 지원 개인 2백~4백만 원 단체 2백~7백만 원
3.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청년·신진·경력단절 예술인 자립을 위한 창작준비과정 지원	총 15건 / 6천 750만 원 개인 4백 50만 원 지원 ※ 생애 단 한번 평생 1회 지급
4. 문화취약계층 특화지원	장애·다문화 대상 창작·준비·기획·실행·발표 예술 프로젝트 운영	총 6건 / 9천만 원 예산 내 차등 지원 개인 최대 7백만 원 단체 최대 1천 5백만 원

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 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공고일(2024.1.16.) 이전 화성시 소재 예술인 및 예술단체(모든예술31 - 경기도 포함)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 ※ 개별 사업별 세부 예술인/예술단체 기준은 각 안내 페이지를 참고
 - ※ 주소지 확인 기준 서류
 - 개인 : 주민등록초본 / 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지원신청 제외사항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제출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대표자)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정치단체, 학원, 교습소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해당 재단을 비롯한 전국의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원금 미반납 등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 접수 마감일까지 2023년 화성시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 및 단체
- 지원대상자가 고용 등을 통해 화성시의 기금 또는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거나 그러한 지원을 받는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 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화성시청, 화성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타 기초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목적의 사업
(※ 목적한 바 아니더라도, 정치·종교·상업적 색채가 짙은 프로그램은 지원불가)
- 학교·종교·시민단체의 행사성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지역축제 등의 그 부속 행사로 계획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중복신청 및 선정 관련 안내

- 당해연도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타 기관 지원 사업 포함) **복수의 지원사업 선정 불가**
- 동일한 예술인(또는 단체)은 동일한 사업으로는 (재)화성시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사업인 ‘화성예술활동지원’, ‘경기에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문화취약계층 지원사업’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별도 사업으로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Q 대표자가 동일한 단체?

- A** 대표자가 동일한 단체 또한 마찬가지로 별도의 사업으로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최종 선정 시 택1)

Q 단체의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신청?

- A** 단체 대표자와 개인 신청자가 동일하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최종 선정 시 택1)

Q 단체 구성원(참여자)이 개인 자격으로 신청?

- A**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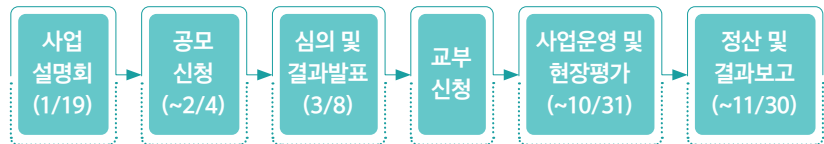
공통 유의사항

- 심의에서 미선정된 사업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심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총평 이외의 개별적인 심의 미선정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일사업으로 국고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주소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 이후 전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까지 2023년 화성시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원본파일 포함)를 미제출한 개인 및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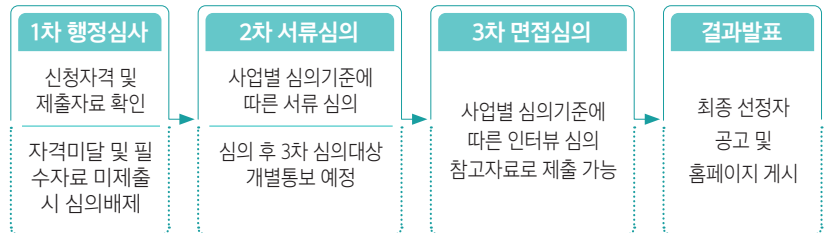
추진일정

구분	일시	내용
공고 및 접수	1. 16.(화) ~ 2. 4.(일)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
사업설명회	1. 19.(금) 14:00	화성예술지원 사업설명회
행정심의	2. 7.(수)	행정심의
서류심의	2. 15.(목) ~ 2. 20.(화)	서류심의
면접심의	2. 27.(화) ~ 3. 5.(화)	면접심의
최종 결과 발표	3. 8.(금)	재단 홈페이지 공고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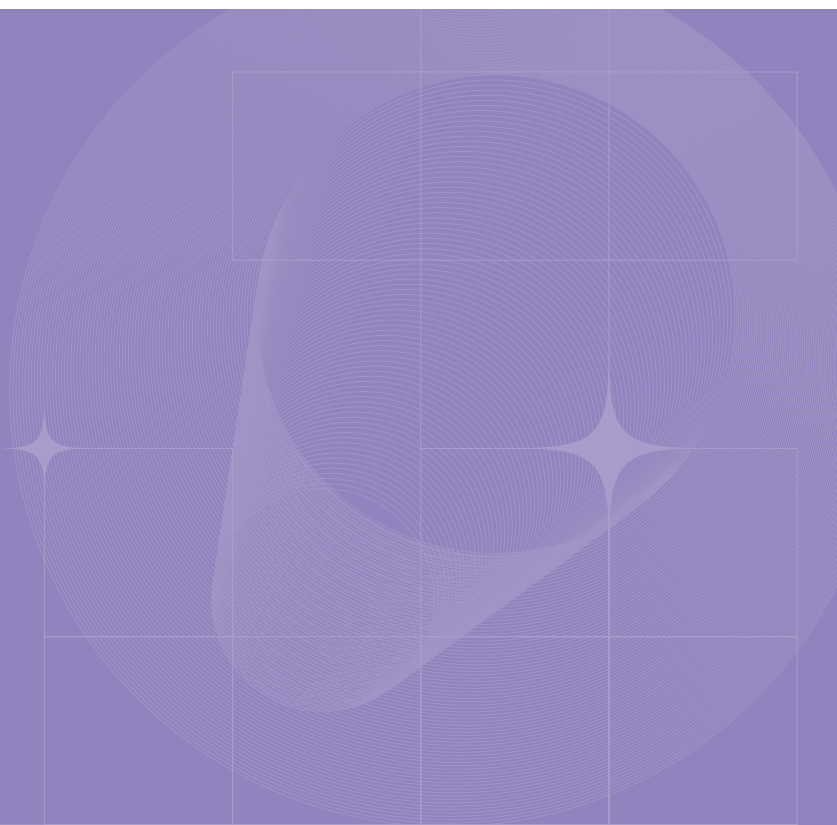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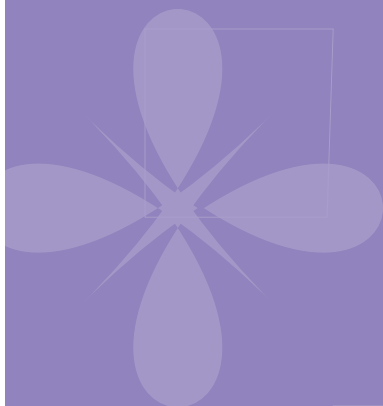


심의절차



문의

팀명	사업명	전화	문의시간
예술인지원팀	문화취약계층 특화지원	031-290-4602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예술창작지원팀	화성예술활동지원	031-290-4673	
	모든예술31	031-290-4672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031-290-4676	



2024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지원안내서

1

2024 화성예술활동지원 공모 안내

1

2024 화성예술활동지원 공모 안내



공모개요

- **사업명** 2024 화성예술활동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화성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 **지원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분야
- **지원규모** 총 4억 원(50건 지원)

공모구성

예술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신청가능액
공연예술	공연 예술 창작활동 및 초연 지원 ※ 정식 공연이 아닌 쇼케이스의 형태로 발표했던 작품 지원 가능 ※ 실연예술의 경우 신규 레퍼토리이면 지원 가능	개인 예술인	
		평균 6백만 원	최저 4백만 원 최고 7백만 원
		예술단체	
		평균 1천 4백만 원	최저 7백만 원 최고 2천만 원
시각예술	시각 예술 창작활동 및 전시 지원 ※ 전시 작품 중 2024년도 창작 작업 포함 의무	개인 예술인	
		평균 6.5백만 원	최저 4백만 원 최고 1천만 원
		예술단체	
		평균 1천만 원	최저 8백만 원 최고 1천 2백만 원
문학분야	문학분야 창작 및 출간지원 ※ 미발표 신작의 연내 출판계약 및 출간 의무	개인 예술인	
		평균 3.5백만 원	최저 3백만 원 최고 4백만 원
		예술단체	
		평균 5백만 원	최저 4백만 원 최고 6백만 원
계		400백만 원	

※ 사업 계획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차등지원할 수 있음.

신청자격

• 신청자격

① 화성시 거주(소재)자

※ 공고일 이전 기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또는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상

② 아래에서 지정하는 예술인/단체

구분	내용
예술인	• 해당분야 전공자(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 만 19세 이상의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예술활동에 관한 세부 기준의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패스의 발급이 완료된 자
예술 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등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단체 내 전문예술인의 구성비율이 50% 이상인 단체

※ '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주요 실연자여야 함.

• 거주지 확인 기준 서류 공고일 이전 거주(소재) 필수

신청구분	확인서류
개인	주민등록초본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단체의 대표자 혹은 단원의 주소지 인정 불가

※ 선정 후 주소지 확인 시 화성시 거주 확인불가 시 선정취소

■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단체 여부,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출 자료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인 예술인·단체 여러분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 공연예술A / 공연예술B / 시각예술A / 시각예술B / 문학분야 별 공개추천 및 모집을 통해 선정한 외부전문가 3명(총 1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심의를 추진합니다.

구분	2024년
심의 위원회	• 공연예술A(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연희부문), 서커스, 다원 등)
	• 공연예술B(클래식, 재즈, 대중음악, 국악, 다원 등)
	• 시각예술A(회화, 설치, 조소, 공예/도예 등)
	• 시각예술B(사진, 미디어 아트, 영상/영화, 다원 등)
	• 문학부문(소설, 시, 수필, 비평, 희곡 등)

• 심의 기준

구분	예술성	계획 타당성	예술실적 (질적평가)	창의성	기대효과	발전 가능성	*지역 특성반영	가산점
서류 심의	20	20	20	-	20	-	15	5
면접 심의	20	-	-	20	20	20	20	

※ <지역 특성반영>항목의 경우 화성시 예술수요·지역콘텐츠·참여자·공간·관객유치 등 다방면으로 심사

※ 2023 「화성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화성», 「예술창작 협업지원」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 서류심의에서 가산점 부여(5점)

평가

• 사업 평가

-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 또는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정산 및 성과보고서, 설문조사지** 등 관련 자료를 기한(11월 30일)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영상 등 성과 관련 자료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의 변경조치

- 사업 선정 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변경에 따른 조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사례비'를 제외하고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의 예산 변경은 별도 신청 없이 가능

구분	변경항목	해당분야	조치사항
사업 주체	사업의 주체 변경 ※ 실질적 주체 변경이 아닌 경우는 예외	전 분야	내부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 취소 가능
포기	사업포기기간 이후 사업포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지원금 취소(환수) 및 차년도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량	지원신청 당시 사업량 또는 사업 일수(회수) 50%초과 축소		협의를 통해 지원금 삭감 또는 평가 불이익
변경 미신청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1~2회 : 주의 및 사후변경신청 3회 이상 : 평가에 반영 (차년도 심의에 반영 가능)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 ※ 접수여부는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됨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 [주최 :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 주관 : 예술인(단체)명] 기재 필수
-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로고 삽입 필수
- “<2024 화성예술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기입 필수

※ [공연/시각 부문] 사업은 1개월 전까지 홍보물(인쇄물 또는 이미지)을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야 합니다(필수).

※ ‘공연’ 운영하는 경우 관객 초청 외에 사전 일반관객 모집(온라인 접수 또는 유선접수) 병행 필수

※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오프라인 홍보물 게시 협조 요청 시 게재 도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최종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1-1

공연예술분야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공모내용

- 2024 신작에 대한 공연예술 작품 초연 활동비 지원

지원규모

- 최저 4백만 원~최고 2천만 원 지원(차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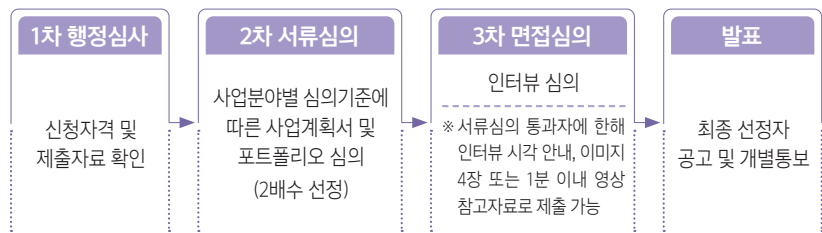
신청자격

-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창작 및 활동을 진행할 화성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세부 지원방향

지원내용	성과물 * 필수	지원한도(백만 원)	
공연 예술 창작활동 및 초연 지원 ※ 정식 공연이 아닌 쇼케이스의 형태로 발표했던 작품 지원 가능 ※ 실연예술의 경우 신규 레퍼토리이면 지원 가능	공연 진행	개인 예술인	
	영상(풀영상 1부, 아카이빙 공개용 10분 이상) 및 공연 사진(고화질)	평균 6백만 원	최저 4백만 원 최고 7백만 원
		예술단체	
	성과보고서	평균 1천 4백만 원	최저 7백만 원 최고 2천만 원

심의방식



상반기 공연장 사용 안내

- 상반기 공연 단체의 경우 아래 공연 일자 선택 시 공연장 사용 가능

공연장	공연 일자	비고
화성 아트홀	6월 14일(금), 15일(토), 21일(금), 22일(토)	
반석 아트홀	6월 26일(수)	

- 상기 일자에 공연가능하며, 대관료는 공연단체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 공연단체 간 동일 일자 경합 시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접수

-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포함)
 - 포트폴리오 1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접수 방법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파일명 설정 안내

☞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화성예술활동지원(공연예술)_지원자명(단체명)

-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제출서류 미인정
- ※ 접수여부는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유의할 점

- 개인의 경우 1인극, 독주, 독창, 독무 작품일 경우를 권장하며 신청자 본인이 실연자 여야 합니다.
- 단체의 경우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편성을 권고합니다.
- 아래에서 제시하는 수익금 기준에 따른 수익금 발생을 권장하며,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해당 지원사업에 사용(사례비로 사용 가능)하거나 정산 시 반환이 원칙입니다. (화성시민 인당 5,000원 권고 또는 무료(할인 적용가격 가능))

1-2 시각예술분야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공모내용

- 2024 신작에 대한 시각예술 작품창작 및 전시/상영 활동비 지원

지원규모

- 최저 4백만 원~최고 1천 2백만 원 지원(차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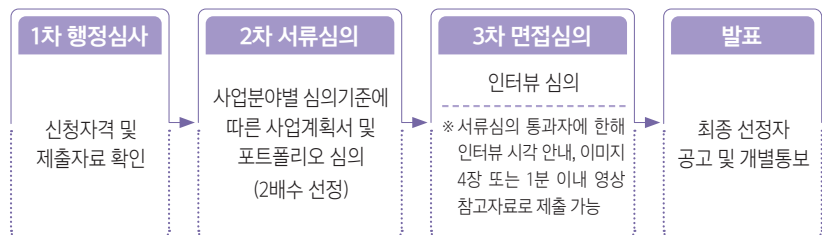
신청자격

-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창작 및 활동을 진행할 화성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세부 지원방향

지원내용	성과물 * 필수	지원한도(백만 원)	
2024년 신작 창작활동 및 전시/상영 지원	전시/상영 등 진행	개인 예술인	
	전시사진(고화질), 작품사진(고화질)	평균 6.5백만 원	최저 4백만 원 최고 1천만 원
		예술단체	
	성과보고서	평균 1천만 원	최저 8백만 원 최고 1천 2백만 원

심의방식



접수

-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포함)
 - 포트폴리오 1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접수 방법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 파일명 설정 안내 ●

📧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화성예술활동지원(시각예술)_지원자명(단체명)

-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제출서류 미인정
- ※ 접수여부는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유의할 점

- 단체의 경우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편성을 권고합니다.

1-3 문학분야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공모내용

- 미발표 신작의 창작 및 출간비 지원(연내출간의무)

지원규모

- 최저 3백만 원~최고 6백만 원 지원(차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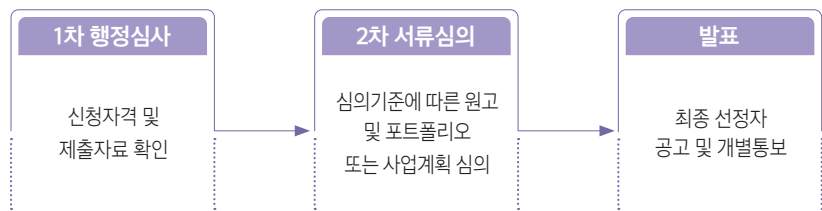
신청자격

- 화성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세부 지원방향

구분	지원내용	성과물 * 필수	지원한도(백만 원)	
창작활동 지원	문학분야 창작 및 출간지원 ※ 미발표 신작의 연내 출판 계약 및 출간 의무	책 출간 진행	개인 예술인	
		출간완료 후 책 5권, 성과보고서	평균 3.5백만 원	최저 3백만 원 최고 4백만 원
			예술단체	
			평균 5백만 원	최저 4백만 원 최고 6백만 원

심의방식



접수

필수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1부**(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포함)
 - **포트폴리오 1부**(* 등단확인 및 주요작품 발표 실적자료 포함 필수)
 - **(개인) 주민등록초본,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 **미발표신작, 출판 작품**
원고의 60% 이상 제출(PDF 제출)
 - **2024년 8월까지 출판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자료
- 선정자에 한해 제출하며 상세 내용은 선정 후 개별안내

접수 방법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파일명 설정 안내

✉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화성예술활동지원(문학부문)_지원자명(단체명)

-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제출서류 미인정
- ※ 접수여부는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문학부문 정산안내

- 문학부문의 경우 **지원금의 100%를 출간비용(출판사)으로** 사용해야 함.
- 정산서 내 지원금에 대한 **영수 증빙 없이 아래 세 가지로** 같음
 - 출판물(결과물) 5권, 이체 확인증, 출판 계약서
- 외부회계검토 불필요

The background is a solid light orange color. It features a large, faint grid pattern that covers most of the page. In the upper right, there is a large, stylized circular motif composed of many fine, concentric lines. On the left side, there is a large, stylized floral or star-like shape with five petals. In the lower right, there is a smaller, similar floral shape. The text is located in the bottom left corner.

2024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지원안내서

2

**경기에술지원 <모든예술31>
화성**

2

2024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화성 공모 안내



공모개요

- **사업명** 2024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화성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 **지원장르**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발표·공유가 가능한 공연, 전시, 행사, 교육 등 형태 무관 모든 예술활동
- **지원규모** 총 1억 7천 8백만 원, 40건 지원
(시비 : 1억 2천만 원 / 도비 : 5천 8백만 원)

공모구성

- **공모구성**

지원내용	신청가능액	지원규모
공연, 전시, 행사, 교육 등 화성시 각지 일상 속 모든 문화예술활동 지원	개인 예술인	총 지원금 1억 7천 8백만 원
	최저 2백만 원 최고 4백만 원	
	예술단체	선정규모 40건 내외
	최저 2백만 원 최고 7백만 원	

- ※ '단순 행사'의 성격이 짙은 사업이 아닌, 지역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문화예술활동 지원 권장
- ※ 사업계획내용 등에 따라 개인/단체 차등지원
- ※ '2024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및 타 시군 '모든예술31' 사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중복신청 가능
하나 최종 선정은 1개만 가능

• 가산점 항목

가산점 항목	내 용	가산점
화성시 예술인 (단체)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또는 소재하고 있는 예술단체	서류 10점 면접 10점
서남부권 예술활동	예술활동의 발표 및 공유가 화성시 서·남부권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해당 가산점 제도를 신청한 예술인(단체)는 화성시 서·남부권에서 예술활동을 1회 이상 운영해야 함. * 화성시 서남부권 : 송산, 서신, 마도, 비봉, 매송, 팔탄, 장안, 양감, 남양, 우정, 향남, 새솔동	서류 5점
전년도 수사례	전년도 2023 「화성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화성」, 「예술창작 협업지원」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	서류 5점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신청구분	신청자격	확인서류
공통	•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활동을 수행할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거주지 확인 서류 (아래 참고)
개인	• 만 19세 이상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예술활동에 관한 세부 기준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패스의 발급이 완료된 자	예술인패스 (해당자)
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 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 생활예술동호회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거주지 확인 기준 서류 : 공고일 이전 거주(소재) 필수

신청구분	확인서류
개인	주민등록초본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단체의 대표자 혹은 단원의 주소지 인정 불가

※ 선정 후 주소지 확인 시 경기도/화성시 거주 확인불가 시 선정 취소



- 화성시 거주(소재) 예술인·예술단체의 경우 지원 신청시 가산점 부여
(향후 거주 확인불가 시 선정 취소 가능)

■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단체 여부,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출 자료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인 예술인·단체 여러분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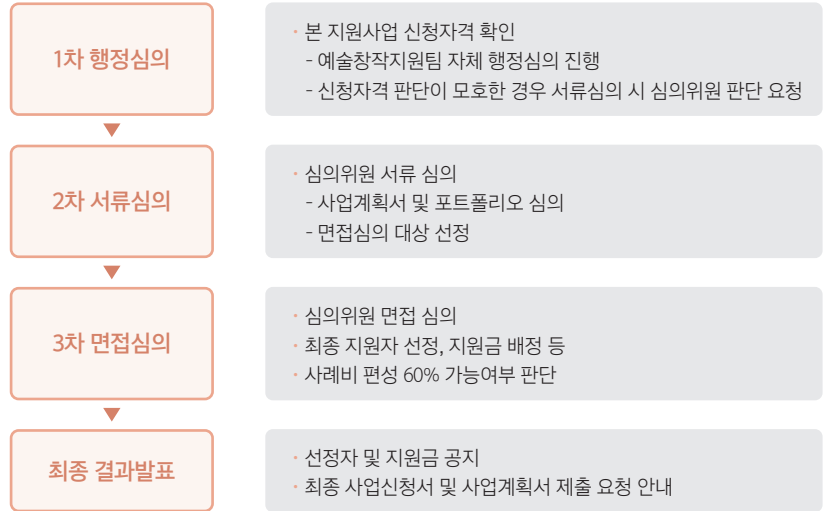
-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분야, 다원, 지역문화 등 공개추천 및 모집을 통해 선정한 외부전문가 6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예술분야	세부분야	심의 위원
문화예술 전 분야	공연, 음악, 무용, 다원, 시각예술, 지역문화, 문학 등	6명

● 심의기준

구분	기준	배점	
		서류심의	면접심의
역량 평가	사업주체의 예술역량	30	30
	사업주체의 발전가능성		
기획력 평가	예술성	30	30
	보편성		
	완성도		
지역성	지역 특성 반영	20	30
가산점	지역 예술인(단체) 가산점	10	10
	서·남부권 활동 가산점	5	-
	전년도 우수사례 가산점	5	-
총점		100	

• 심의절차



접수

•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1부(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포함)
- 포트폴리오 1부
- (개인) 주민등록초본,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접수 방법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모든예술31_지원자명(단체명)**
 - ※ 접수여부는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
 -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제출서류 미인정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

- IT 약자 고려 현장 접수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접수를 지원합니다. (1월 19일까지 유선으로 사전 신청 필수, 계획서 내용 및 작성에는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평가

• 사업 평가

-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며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영상, 정산서, 성과보고서, 설문조사지** 등 관련 자료를 기한(**11월 30일**)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영상 등 성과 관련 자료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심의결과는 차년도 지원사업 심의 시 반영됩니다.
- 경기문화재단에서 공통으로 시행하는 관객 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의 변경조치

- 사업명, 사업일시, 사업내용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전 변경신청 필수
- ‘사례비’를 제외하고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의 예산 변경은 별도 신청 없이 가능

구분	변경항목	해당분야	조치사항
사업 주체	사업의 주체 변경 ※ 실질적 주체 변경이 아닌 경우는 예외	전 분야	내부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 취소 가능
포기	사업포기기간 이후 사업포기 ※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예외		지원금 취소(환수) 및 차년도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량	지원신청 당시 사업량 또는 사업일수(횟수) 50% 초과 축소		협의를 통해 지원금 삭감 또는 평가 불이익
변경 미신청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예외		1~2회 : 주의 및 사후변경신청 3회 이상 : 평가에 반영(차년도 심의에 반영 가능)

유의할 점

- 개인의 경우 1인극, 독주, 독창, 독무 작품일 경우를 권장하며 신청자 본인이 실연자여야 합니다.
- 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편성을 권장합니다.
- 수입금 발생시 전액 해당 공연 작품에 재투자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성 사례비를 포함하는 [행사·홍보비] 전반 / 영수증빙 필수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금년 평가결과는 차년도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심의에 반영됩니다.

-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후원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 주최 :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기재
- ❖ 공연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도록, 서적, 음반 등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의 모든예술31(경기예술지원) 사업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기재
-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로고 삽입

문의

-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팀 031-290-4672
- 문의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2024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지원안내서

3

신진예술인자립지원 사업

3

2024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공모 안내



공모개요

- **사업명** 2024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화성시 거주 신진예술인(개인)
- **지원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분야 ※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
- **지원규모** 총 6,750만 원(15건 지원) ※ 생애 단 한번 평생 1회 지급

공모구성

지원내용	신청가능액	지원규모
예술 활동을 바탕으로 한 자립지원과 관련한 내용 - 창작 자립 단계의 준비과정을 포함한 활동 (리서치, 조사, 인터뷰, 실험 및 연구, 워크숍 등) - 단순 예술창작활동이 아닌 예술기획, 실험, 창작 등 예술창작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각종 준비과정을 지원	개인 예술인	총지원금 : 6천 7백 5십만 원
	4백 5십만 원 (정액지원)	선정규모 : 15건

※ 사업 계획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건수는 조정될 수 있음.



자립준비금 작성예시

- 작품 제작을 위한 공연의 무대, 소품 제작을 진행하겠다.(부적합)
- 미술작업을 위한 재료구매와 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 대관료로 사용하겠다.(부적합)
- 미술 재료 구입 후 작품을 완성하여 아트마켓 참여, 아트상품 개발하여 자립하겠다.(적합)
- 독립서적 제작을 위한 리서치를 위해 조사 인터뷰 진행 후 책을 발간하여 납품하겠다.(적합)
-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개선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및 이들이 함께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적합)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청년예술인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이 아닐 경우, 지원 분야 예술활동 경력 3년 이내의 자	질병,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군대 등

※ 위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단체 여부,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출 자료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인 예술인·단체 여러분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의무사항

- 최종 선정 이후,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 쇼케이스 및 성과보고회 필수 참석
- ※ 세부일정 선정자 대상 추후 공지

구분	일정	비고
쇼케이스 워크	2024. 10. 23.(수) (예정)	선정자 필수 참석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 예술분야에 따른 공개추천 및 모집을 통해 선정한 외부전문가 3명으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심의를 추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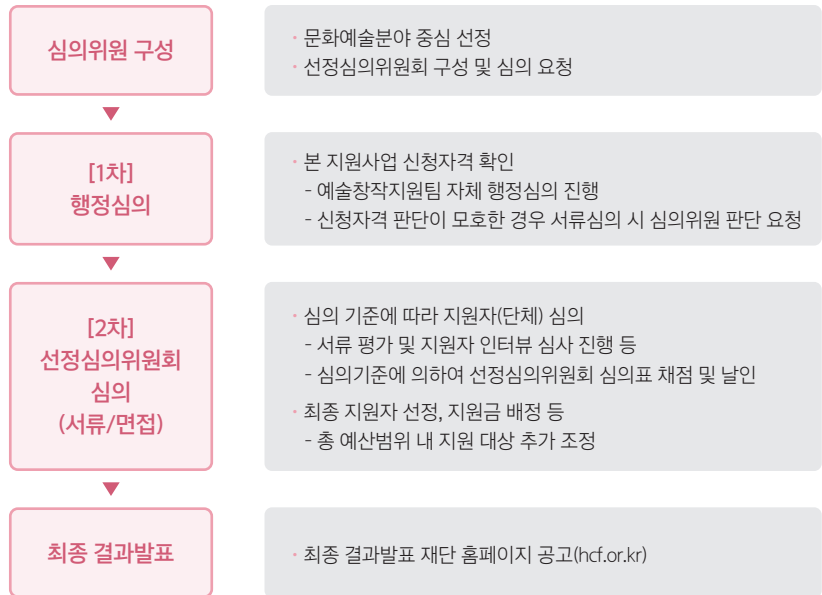
• 심의 기준

구분	기준	배점
지원자격 평가 (20%)	지원자의 예술성, 창의성 및 전문성	10
	지원 예술인의 창작 및 자립 활동 수행 역량	10
사업성 평가(40%)	사업 목적의 적절성 및 사업 이해도	10

구분	기준	배점
사업성 평가 (40%)	본 사업 활동의 구체성 및 계획의 충실성	10
	지원자의 활동 계획과 본 사업과의 적합성	10
	자립 활동 계획의 참신성, 독창성	10
사업수행 능력 및 자립 가능성 (40%)	자립 지원금 집행 계획 및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도	20
	향후 창작 및 자립 활동의 성장가능성 및 지속발전가능성	20
총점		100

※ 서류 심의와 면접 심의 기준 동일, 각 평가(심의) 단계 점수는 연계, 승계되지 아니하며 상호 무관함

• 심의 절차



접수

•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1부
- 개인 소개서 및 주요활동 실적(포트폴리오) 1부
-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개인 증빙서류(신진 및 경력단절 관련 서류 등)

● 접수 방법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신진예술인 자립_공연_지원자명**
 - ※ 추후 선정자에 한해 서명한 지원서 원본 제출
 -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제출서류 미인정
 - ※ 접수여부는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평가

● 현장 컨설팅

-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재단 현장 컨설팅 및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정산 및 성과보고서, 설문조사지** 등 관련 자료를 기한(**11월 30일**)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영상 등 성과 관련 자료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의 변경조치

- 사업 선정 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변경에 따른 조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사례비’를 제외하고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의 예산 변경은 별도 신청 없이 가능

구분	변경항목	해당분야	조치사항
사업주체	불가	전 분야	지원금 취소
포기	사업포기기간 이후 사업포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지원금 취소(환수) 및 차년도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량	지원신청 당시 사업량 또는 사업일수(횟수) 50% 초과 축소		협의를 통해 지원금 삭감 또는 평가 불이익
변경 미신청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1~2회 : 주의 및 사후변경신청 3회 이상 : 평가에 반영(차년도 심의에 반영 가능)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 [주최 :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 주관 : 예술인(단체)명] 기재 필수
-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로고 삽입 필수
- “<2024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기입 필수

※ 사업 1개월 전까지 홍보물(인쇄물 또는 이미지)을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야 합니다(필수)

문의

-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팀 031-290-4676
- 문의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4

문화취약계층 특화지원 사업

4

2024 문화취약계층 특화지원 공모 안내



공모개요

- **사업명** 2024 문화취약계층 특화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화성시 거주 장애/다문화 예술인(단체)
- **지원내용** 문화취약계층(장애/다문화) 대상 다양한 예술 활동, 발표 지원
- **지원규모** 총 9,000만 원(6건 내외 지원)

공모구성

지원내용	신청가능액	지원규모
창작·준비·기획·실행·발표 프로젝트 운영 - 예술 창작활동 운영 계획서 심의를 통해 지원 ※ 활동지역은 화성시에 한정함	개인 예술인	총지원금
	최고 7백만 원	9,000만 원(구천만 원)
	예술단체	선정규모
	최고 1천 5백만 원	6건 내외

※ 사업 계획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차등지원할 수 있음.

신청 자격

개인(장애)	단체(장애)	외국인, 다문화
•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 활동을 하는 장애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 소지자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을 펼쳐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 구성원 중 화성시 거주 장애 예술인이 30% 이상 소속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 ※ 단체대표자 또는 프로젝트 구성원 중 중추적인 역할로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프로젝트 참여자 변경 불가)	• 다문화가족 예술인 개인 •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 ※ 다문화가족 해당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 2호에 따름

※ 위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개인/단체 간 중복지원 불가 및 공고일 이전 기준 발급분만 인정, 유효기간 확인)

■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단체 여부,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출 자료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인 예술인·단체 여러분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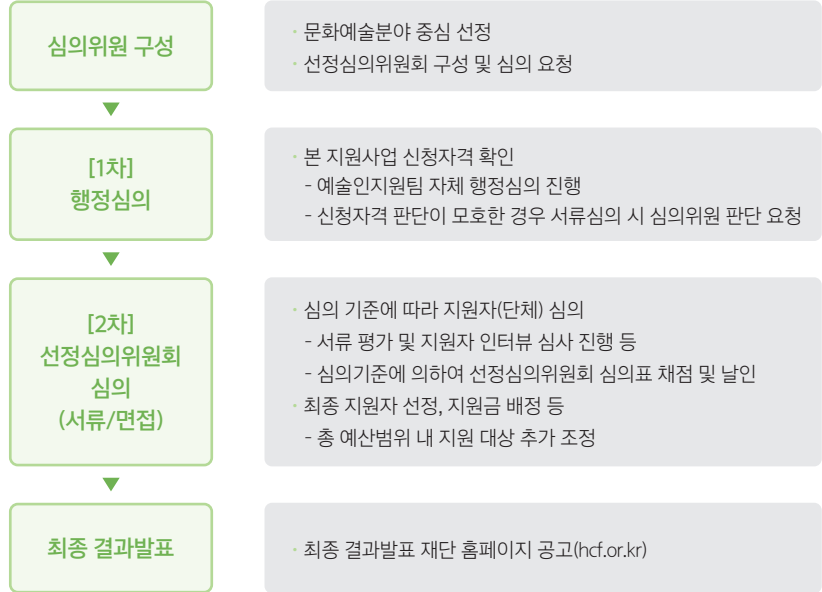
- 예술분야에 따른 공개추천 및 모집을 통해 선정된 외부전문가 3명으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심의를 추진합니다.

● 심의 기준

구분	기준	배점
자격 평가 (20%)	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10
	문화취약계층(장애, 다문화)의 참여가 적절하다.	10
	문화취약계층(장애, 다문화)의 참여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단체)	
계획 평가 (40%)	활동계획(프로젝트)에 예술성, 참신성, 독창성이 있다.	20
	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20
추진 역량 (20%)	사업취지에 부합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10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10
기대 효과 (20%)	해당 사업을 통해 예술적 성장과 발정 가능성이 기대된다.	20
총점		100

※ 서류 심의와 면접 심의 기준 동일, 각 평가(심의) 단계 점수는 연계, 승계되지 아니하며 상호 무관함

• 심의 절차



접수

•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1부
- 단체 또는 개인 소개서 및 주요활동 실적(포트폴리오) 1부
- 단체 또는 개인 증빙서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접수 방법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istsupport@hcf.or.kr)
-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문화취약계층 특화_지원자명(단체명)
 - ※ 추후 선정자에 한해 서명한 지원서 원본 제출
 -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제출서류 미인정
 - ※ 접수여부는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평가

- 모니터링
 -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재단 모니터링 및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정산 및 성과보고서, 설문조사지** 등 관련 자료를 기한(**11월 30일**)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영상 등 성과 관련 자료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의 변경조치

- 사업명, 사업일시, 사업내용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전 변경 신청 필수
 - ‘사례비’를 제외하고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의 예산 변경은 별도 신청 없이 가능
- 사업 선정 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변경에 따른 조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구분	변경항목	해당분야	조치사항
사업주체	변경 불가	전 분야	지원금 취소
포기	사업포기기간 이후 사업포기 ※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예외		지원금 취소(환수) 및 차년도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량	지원신청 당시 사업량 또는 사업일수(횟수) 50% 초과 축소		협의를 통해 지원금 삭감 또는 평가 불이익
변경미신청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예외		1~2회 : 주의 및 사후변경신청 3회 이상 : 평가에 반영(차년도 심의에 반영 가능)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 [주최 :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 주관 : 예술인(단체)명] 기재 필수
-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로고 삽입 필수
- “<2024 문화취약계층 특화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기입 필수

※ 사업 1개월 전까지 홍보물(인쇄물 또는 이미지)을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야 합니다(필수)

문의

-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팀 031-290-4602
- 문의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2024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지원안내서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요령

1

추진절차

단계	내용	시기	내용
①	선정결과 공고	2024. 3. 8.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www.hcf.or.kr) '공고' 선정 예술인(단체)
②	사업포기 기간	~2024. 3. 21.	-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사업포기신청서 제출(양식 첨부) - 재단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절차 안내 요청 ※ 타 기관과 동일 사업 중복 지원 불가
③	교부신청서 검토	사업시작 2개월 전까지	- 지원금 관리를 위한 계좌(신규계좌 개설 혹은 기존 계좌(0원) 사용) 및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 - 결정된 지원금으로 교부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산출근거는 지원금 운용지침(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 심의 시 조건부 의결로 선정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서 작성 ※ 포기신청 기간 이후에 적절한 이유 없이 사업포기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사업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④	교부신청	재단 담당자 검토 완료 후 즉시	- 재단 담당자가 교부신청서를 검토 - 접수 후 14일 이내 지원금 교부 예정 (단, 재단 상황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 지연될 수 있음)
⑤	사업수행	사업기간 내	지원금 교부 후 사업수행
⑥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기간 내	-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및 사업 담당자 모니터링 진행 - 사업별 관객 만족도 조사 진행 적극 참여 의무
⑦	사업변경	해당 사항 발생 시	- 교부신청 이후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지원금 교부 후, 사업계획을 크게 변경하거나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변경 신청서 송부 ※ 사업종료 이후 사업 변경 불가
⑧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정산보고 및 결과보고 등록 후 제출, 잔액이자 반납 - 지원금 집행 및 정산은 2024. 11. 30. 안에 마감되어야 함 ※ 기간 내 정산자료 미제출 시 추후 지원사업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교부신청

가 | 지원금 계좌(체크카드) 준비

1) 지원금을 교부 받을 계좌와 체크카드 준비

-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의 잔액을 전부 인출 하여 사용(은행 제한 없음)
- 기존 계좌 사용 시 교부신청서 내에 잔액 0원이 찍힌 통장 사본 첨부 요망
- 체크카드 사용이 필요 없으면 발급 생략

2) 1개 사업 당 1개의 전용 계좌(체크카드) 사용 원칙

- 동일한 계좌로 타 사업 및 타 기관 지원금을 함께 받아 사용할 수 없음

3) 예금주는 단체의 경우 '단체명', 개인은 '본인 실명'으로

- 단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계좌 개설 가능(대표자명과 단체명이 함께 명기 권장)
ex) 김○○(극단○○○)

4) 지원금 집행은 거래처로 직접 '계좌이체' 혹은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건만 인정

- 지원금을 현금 인출하거나 본인 및 단체의 타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할 수 없음

5) 자부담금은 지원금 계좌와 별도 분리하여 관리

- 자부담금이 있을 경우 지원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반드시 타 계좌에서 사용 및 집행.
- 자부담금 지출 시에는 개인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가능
- 자부담금 관련 정산 없음

6) 사업 종료 후 5년간 통장 보관 必(재단 요청시 제출)

- 통장 표지에 지원연도, 지원사업 분야, 사업명을 메모하여 보관

나 |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

제출처	사업별 담당자 이메일
제출기간	사업시작 2개월 전까지
제출방법	교부신청서(재단 지정서식, 별도첨부) 한글 파일 작성
사업수행기간	~ 2024. 10. 31.(일) ※ 작품발표, 지원금 집행 포함한 기간

- 예산 작성시에는 **3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을 참고하여 작성
- 사업 담당자가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단의 지원금 관리 지침에 따라 사업내용 및 예산편성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교부신청

제출처	사업별 담당자 이메일 제출
제출기간	사업 담당자의 교부신청서 검토 이후 ~ 사업시작 2개월 전까지
제출서류	교부신청서 1부, 최종 사업계획서(공모 시 제출했던 계획서의 최종버전) 1부, 지원금 계좌 사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각종 동의서 및 서약서 등
지원금 교부시기	접수된 교부신청 승인 이후 14일 이내(재단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사업 담당자가 승인한 최종 교부신청서 서류를 기준으로 교부신청 진행

• 교부신청서의 적정성 검토

- 지원금의 집행은 교부신청 시 작성한 예산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
- 사업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부신청 시 사업계획’이 ‘지원신청 시 사업계획’과 상당 부분 다를 경우, 재단은 지원금 규모를 재조정 하거나 해당 사항을 사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의 변경으로 당초 사업의 기대효과가 상당 부분 저해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단은 교부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선정 이후이라도 선정된 사업이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재단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3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며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지원금의 최소 5~10%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 편성 권고

■ 예산편성 불가 항목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 취득비(장비 구입),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인 예산편성
- 지원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항목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관련 경비 : 상금, 상금 심사비 등
-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하도급 비용으로 편성하는 경우(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직접 수행이 원칙)
-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회계검사수수료

- 2024년부터 모든 사업에 회계검사를 실시(문학 출간부분 제외)
- 회계검사는 재단이 지정한 회계검사법인이 선정 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과 세부 집행내역을 검증하고 증빙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임
- 이에 모든 선정 예술인(단체)은 **기타운영비** 세목으로 아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필수 편성**바람

사업규모	수수료	비고
• 3백만 원 미만	150,000원	•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자부담금을 제외한 재단 지원금 결정액 의 사업 규모로 산출함
• 3백만 원 이상 ~ 5백만 원 미만	180,000원	
•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미만	210,000원	
• 1천만 원 ~ 1천 5백만 원 미만	250,000원	
• 1천 5백만 원 ~ 2천만 원 미만	290,000원	

■ 세목별 집행기준

세목	내용	집행수단 및 정산증빙자료	
사례비	-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 각종 수당과 인건비 (일반 개인 대상) - 원천세(사업3.3%/기타8.8%)를 포함한 금액 작성 - 예술인고용보험 해당 시, 예술인부담분의 보험료(0.8%) 포함 - 즉, 원천세와 보험료를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작성 - 지급 시에는 원천세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이체 (이후 원천징수 및 보험료 신고 납부 필수) - 대표자 혹은 개인 사례비는 지원금의 - 단체 : 15% (최대 150만 원 한도)까지 편성 가능 - 개인 : 20%(최대 150만 원 한도) 까지 편성 가능 - 사례비 편성 제한 - 지원금이 5,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사업비(지원금+자부담)의 50% 이하로 편성해야 함(심의 시 60%까지 편성 가능으로 결정된 경우 60% 이내로)	계좌 이체	✓ 필수 1. 이체확인증 2. 표준계약서 3. 사례비지급내역서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국세 납부 확인서 6. 지방세 납부 확인서
			✓ 필요 시 7.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8. 종합소득세 신고 서약서 9. 예술인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홍보비	- 홍보 마케팅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인쇄, 디자인, 광고비 등 - 작품집, 도록, 연구서적, 프로그램 북 등 도서 인쇄물의 발간 비용	체크 카드	1. 체크카드 영수증 2. 견적서(거래명세서)
		계좌 이체	1. 이체확인증 2. 전자(세금)계산서 3. 견적서(거래명세서)
제작비	- 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창작을 위한 각종 제작비에 해당하는 세목 - 사업자 대상 각종 문화예술 영역 등 - 재료비' 세목과 혼동 없도록 유의 ex) 소품을 전문 업체에 수주 제작 = 제작비 소품을 직접 만들기 위한 재료 구입 = 재료비	카드	1. 체크카드 영수증 2. 견적서(거래명세서)
		계좌 이체	1. 이체확인증 2. 전자(세금)계산서 3. 견적서(거래명세서)

세목	내용	집행수단 및 정산증빙자료	
재료비	• 소품, 도구 등 창작을 위한 각종 재료 • 편성불가 : 자산으로 취득 가능한 장비구입	체크카드	1. 체크카드 영수증 2. 견적서(거래명세서)
		계좌이체	1. 이체확인증 2. 전자(세금)계산서 3. 견적서(거래명세서)
기타 운영비	• 상위 예산과목에 속하지 않는 기타 비용 • 필수 회계감사수수료 : 기준표 참고하여 편성 • 예술인고용보험료 : 예술인고용보험 해당 시 사업주 부담금 0.8% 미리 편성 • 회의운영비 : 자원금으로 집행 시 건별 회의록 정산서에 필수 첨부 ⇒ 단체의 경우 자부담으로 책정 권고 • 편성불가 : 행사기념품, 경품, 교통비, 유류비	카드 집행	1. 체크카드 영수증 2. 견적서(거래명세서)
		계좌이체	1. 이체확인증 2. 전자(세금)계산서 3. 견적서(거래명세서)
		공통	회의운영비 집행 시 ✓ 필수 회의/행사일지
대관료	• 공연장, 전시장, 작업실, 스튜디오, 연습실, 회의실 등 각종 공간 대여 및 부대시설 사용료 • 편성불가 : 일상적인 운영경비(사무실 임대료, 작업실 월세),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체크카드	1. 체크카드 영수증 2. 견적서(거래명세서) 3. 대관계약서
		계좌이체	1. 이체확인증 2. 전자(세금)계산서 3. 견적서(거래명세서) 4. 대관계약서
임차료	• 장비, 소품 대여비 등	체크카드	1. 체크카드 영수증 2. 견적서(거래명세서)
		계좌이체	1. 이체확인증 2. 전자(세금)계산서 3. 견적서(거래명세서)

■ 집행수단 별 증빙자료

집행수단	구분	필요서류	내용	발급방법
체크카드	필수	체크카드 영수증	거래 상세내역(품목,수량,단가), 결제일시, 카드번호, 가맹점명이 확인 가능해야 함	거래처, 카드사
	해당 시	견적서 (거래명세서)	카드영수증에 상세내역(품목,수량,단가 등)이 미표시된 경우 혹은 결제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거래처
		회의 및 행사일지	기타운영비-회의비 집행 시 필수제출자료	재단 지정서식
계좌이체	필수	이체확인증	출금계좌번호, 이체일시, 받는 이의 성명과 계좌번호, 이체금액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은행
		전자(세금)계산서	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전자가 아닌 수기 및 종이 (세금)계산서는 불인정)	거래처
	해당 시	견적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에 상세내역(품목,수량,단가)이 미표시된 경우 혹은 결제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거래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체와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일이삼사) 로 발급	거래처
		회의 및 행사일지	기타운영비-회의비 집행 시 필수제출자료	재단 지정서식
계좌이체 (사레비)	필수	이체확인증	받는 이의 성명과 계좌번호가 확인 가능해야 함 (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화면 캡처 가능)	은행
		표준계약서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 상황에 맞게 자유 변경 가능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필수 기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서식
		사레비 지급내역서	사레비 지급 대상자의 정보를 일괄 작성	재단 지정서식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 관련 필수제출자료	홈택스, 세무서
		국세 납부확인서	사업소득 3% / 기타소득 8%	홈택스, 은행, 세무서
		지방세 납부확인서	사업소득 0.3% / 기타소득 0.8%	위택스, 은행, 세무서
	해당 시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사레비 지급내역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및 지방세 납부확인서 간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홈택스,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서약서	본인 혹은 대표자 사레비 집행 시 필수제출자료	재단 지정서식
		예술인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납부 시 필수제출자료	근로복지공단

■ 지원금 집행 시 유의사항

- 지원금을 교부받기 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사후 지급 및 정산 불가
- 지원금 집행은 거래처에 직접 '계좌이체' 혹은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함
-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거부) 업체와의 거래 지양
- **지원금을 현금 인출하거나 타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집행은 불가**
-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집행과 동시에 발급받고, 사업 종료 후에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함
-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지원금 통장, 지출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 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온라인 결제 시 유의사항

- 계좌이체가 아닌 **체크카드** 사용 원칙
- 부득이하게 무통장입금 진행 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현금영수증 발급
- 쇼핑몰 사이트 내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을 금함
- 네이버페이, 카카오 페이 등 사용 시 계좌를 연결하여 충전 결제 금지
- 캐시백, 체크카드 할인 등 발생할 경우 정산 시 '이자'로 처리

■ 지원금 집행 불인정 항목

- **정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카드영수증(매출전표)을 발급하지 않은 집행 건 (사례비 외)
 - 종이에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나, 국세청 지정코드(010-000-일이삼사)로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의 작성일자가 교부신청서 상 사업기간을 경과한 경우
- 현금 입출금,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 지원금 교부 이전에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선집행하는 경우(사후 지급 및 정산 불가)
- 영수증 등 증빙자료 사후 일괄 발급(모든 서류와 자료 간의 집행일자 및 금액은 상호 일치해야 함)
-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목적 외 사용금지)
- 친족 간 혹은 출연진(참여자) 관련, 소유 업체 등과의 거래

■ 지원금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지원금 교부 시 서약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상실함.

- ①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사항을 위반할 것이 확실하거나 위반하였을 때
- ②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단하였을 때
- ④ 정상적인 금융 거래 및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때
- ⑥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⑦ 보조금 정산서를 특정한 이유 없이 1개월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참고

사례비 집행 시 유의사항

- **사례비**란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과 인건비를 말함
- 타인에게 사례비 세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원천징수** 대상으로 **원천세**가 포함됨
- 또한, **예술인고용보험** 대상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음
- 사례비를 편성할 때는 **원천세와 고용보험료**(예술인 부담분 0.8%)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사업주 부담분의 고용보험료 0.8%를 기타운영비 세목으로 별도 편성
- 사례비를 실제 지급할 때에는 **원천세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대상자에게 이체해야 함
- 이후 원천세와 고용보험료는 지급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함
 - ※ 사례비의 경우 지원금이 5,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사업비(지원금+자부담)의 50% 이하로 편성해야 함(심의 시 60% 까지 편성 가능으로 결정된 경우 60% 이내로)
 - ※ 단체 대표자 사례비의 경우 **지원금의 15% 이내, 최대 150만 원까지** 편성할 수 있음.
 - ※ 개인 본인 사례비의 경우 예술활동 및 창작활동 시 본인 사례비가 인정되며, **지원금의 20% 이내, 최대 150만 원까지** 편성할 수 있음.

4

정산 및 결과보고

가 | 실적보고서 작성

- 사업 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정산서+결과보고서) 작성 완료하여 송부
- 서식 별도 첨부
- 최종 정산 검토 완료 11월 30일까지 완료 필수

나 |잔액 및 이자 반납

- 지원금 잔액 1원 이상, 이자 발생액 1원 이상 발생 시 재단에 반납(자부담금은 해당 없음)
- 반납 계좌 정보는 재단의 각 사업 별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회계법인 검토 종료 이후 월별 일괄 안내 예정)

다 |정산단계 안내

- 정산 단계 안내

• **[예술단체/개인]** 실적보고서 작성 및 회계법인 송부 → 회계법인 검토 → 회계법인 확정 및 검토보고서 송부 (11월 30일까지 마무리 必(필)) → 재단 확정 → **[예술단체/개인]** 재단에서 안내해주는 계좌로 정해진 일자에 잔액 및 이자 반납 → **[예술단체/개인]** 재단으로 최종 실적보고서 원본 송부 & 재단으로 성과물 송부(이메일 제출 가능)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실적보고서 2. 각종 증빙자료 첨부	실적보고서 재단서식 별도 첨부
필수	3. 성과물(영상, 사진 등)	공연의 경우 10분 내외 영상 제출 필수, 전시의 경우 작품 및 전시전경 고화질 사진 필수



2024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지원안내서

<2024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지원안내서

발행처 (재)화성시문화재단

발행일 2024. 1. 16.~2. 4.

주최·주관 화성시, (재)화성시문화재단

후원 경기도, 경기문화재단(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사업에 해당)

예술지원센터

1. 화성예술활동지원 031-290-4673
2.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화성 031-290-4672
3.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031-290-4676
4. 문화취약계층 특화지원 031-290-4602

디자인/제작 디자인봄

표지 디자인 그로우엔트

* 본 책자에 기재되어있는 공모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친구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를 추가해 주시면 예술지원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 화성예술지원 통합 공모



고은주 <성취부, 50×40cm, 비단에 채색, 2023> @nivea0104

1.16.(화) ~ 2.4.(일)